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Parliamentary Diplomacy: Trends and Analysis

## I. 독일의회의 제2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안의 주요 내용

2020년 6월 19일 독일 연방하원은 기민/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의 연립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세제지원법안(Zweites Corona-Steuerhilfegesetz)의 본회의 심사를 위한 제1독회(Erste Lesung)에 들어갔다.<sup>1)</sup>

지난 2020년 5월 1차 세제지원법안은 요식업에 대한 감경 부가가치세율 적용,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특별수당에 대한 최대 1,500유로 비과세 처리, 고용주의 조업단축지원금(Kurzarbeitergeld)에 대한 보조금의 보수총액과 실제보수액 간 차액의 최대 80% 비과세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sup>2)</sup>

이번 2차 세제지원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간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함으로써 경기 침체국면에서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약화된 구매력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제2차 세제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율(Umsatzsteuersätze)을 2020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19%에서 16%로 인하한다. 서적, 신문 등에 적용되는 할인세율은 7%에서 5%로 하향조정된다. 기업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속상각(depressive Abschreibung) 허용한도를 연 25%로 설정하고, 기업 손실보전은 5백만 유로에서 천만 유로로 확대된다. 또한 내수 활성화와 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상(6,000 유로 → 9,000 유로), 전기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수당 및 복리후생의 형태로 최대 1,500 유로까지 비과세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세제지원법안에는 한부모가정과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Entlastungsbetrag)이 2020년과 2021년에 한해 1,908유로에서 4,008유로로 인상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아동에게는 9월과 10월에 300유로가 지급된다.

1) Deutscher Bundestag. 「Corona-Konjunktur - paket und Nachtrags - haushalt auf den Weg gebracht」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0/kw25-de-corona-steuerhilfe-700852\\_chlwhd](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0/kw25-de-corona-steuerhilfe-700852_chlwhd), 최종 검색일: 2020.6.22.)

2) Haufe. 「Bundesrat stimmt Corona-Steuerhilfegesetz zu」 ([https://www.haufe.de/steuern/gesetzgebung-politik/corona-steuerhilfegesetz\\_168\\_515404.html](https://www.haufe.de/steuern/gesetzgebung-politik/corona-steuerhilfegesetz_168_515404.html), 최종 검색일: 2020.6.22.)

김종갑 입법조사관



##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과 향후과제

### 1. 들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이윤추구를 넘어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책임을 일컫는 표현이다.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sup>3)</sup>에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결정된 이후 CSR 제고를 위한 규범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CSR 인증이 국제무역의 조건으로 제도화될 경우 이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CSR의 개념과 관련 제도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의회외교에서 고려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CSR 개념

CSR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및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4)</sup>

먼저,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법적 책임이란 기업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윤

리적 책임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은 자신의 모든 이해관계자<sup>5)</sup>의 기대,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자선적 책임은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경영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 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CSR은 최근 지속가능 성장 관련 논의의 주요 개념인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sup>6)</sup>이나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sup>7)</sup>로 확장되어 왔다.

### 3. CSR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과 주요 쟁점

#### 1) 해외동향

CSR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국제연합(UN)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각종 비정부기구(NGOs)에서 지속되어오다가 2010년 ISO 26000의 발표로 통일성과 구체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CSR을 자율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비재무정보인 ESG(환경개선, 사회책임 이행,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공시 강화를 법제화하는 기조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sup>

이에 따라 경제 규모 상위 50개국은 상장 기업의 스투어드십 코드<sup>9)</sup> 도입, ESG 정보공시 등을 위해

5) 경영자, 투자자, 소비자, 사회단체, 정부 등

6)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요구도 충족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임팩트 투자인 환경·복지 등 여러 사회 현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재무적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일종의 '착한 투자'를 의미함

8)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인용함. 산업정책연구원, 「국가별 CSR 제도화 동향」, 『IPS CSR·CSV 동향리포트』 18-03, 2018년 10월.

9)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3)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4) Archie B. Carroll, 「The Four Faces of Corporate Citizenship」, 『Business and Society Review』, vol. 100, no. 1, September 1998.

연기금 및 증권거래소 차원에서의 정책과 규제를 도입해 왔다. CSR에 있어서 선도적 위치를 지켜온 EU는 2014년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법안 통과 후 유럽 지역 내외 협력기업으로까지 경영 투명성 요구를 확대하였다.<sup>10)</sup>

이에 따라 해외 대규모 투자나 수출입 등 해외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기업이 비재무정보 공시를 요구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보 공시는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 국내동향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후 「산업발전법」제 18조에 근거한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TM)<sup>11)</sup>를 실시하거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재무구조 변경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동법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본의 변동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특히 동법 제147~151조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보유지분 변동, 보유목적 변경 등 M&A와 관련된 주식 등의 보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주인(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고객의 자산을 충실하고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 지침을 말함. 2010년 영국을 필두로 미국, 호주, 일본 등 총 20여 개 국가에 도입됨.(매경 시사용어사전)

10) EU의 법률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CSR 제고를 이미 법제화한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EU 차원의 법제화를 자국 법에 적용하여 공시 적용 기업의 확대, 제 3자 검증(Verification)의 의무화를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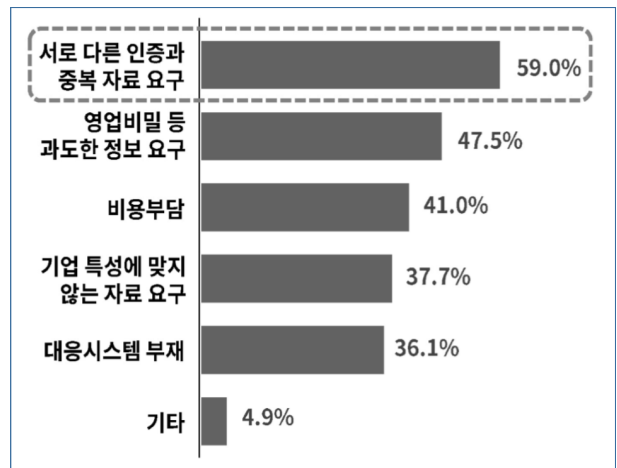
1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촉진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기업 실태조사로, 비전, 지배구조, 인권 및 노동, 윤리경영,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경영 8개 영역으로 구분됨

그 외에도 2017년 3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한 공시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하여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개 항목<sup>12)</sup>)’에 따른 기업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15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운영방식의 개선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2018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120개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SR 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은 서로 다른 인증과 중복 자료 요구, 영업비밀 등 과도한 정보 요구, 비용부담, 기업특성에 맞지 않는 자료 요구, 대응시스템 부재 등의 애로사항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그림] CSR 평가 관련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주: 복수응답 가능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앞의 글, 2018년 11월 19일.

12) 주주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 기구, 외부감사인

13) 대한상공회의소, 「수출기업의 CSR 리스크과 대응과제」, 『수출기업의 CSR 리스크과 대응전략 세미나 자료집』, 2018년 11월 19일.

### 3) 주요 쟁점

CSR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개념과 자율성 여부, 인증 체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먼저 CSR의 개념은 단일하지 않으며 가변적인 속성을 지녔으므로 구체적 이행을 앞두고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가진 국가 및 국제기구 간 통일된 의견을 갖기 어렵다.

또한 CSR 유형 중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준수의 영역에 속하는데 이를 규범화하여 강제성을 부과할 경우 양적으로는 CSR이 제고되더라도 질적 제고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CSR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문화가 뿌리깊은 유럽국가나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에게는 수용이 용이한 요구일 수 있으나 개도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는 개도국 기업 뿐 아니라 선진국의 중소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수출의존도를 고려하면 OECD 평균 수준의 CSR 관련 기조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CSR 인증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범화 기조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CSR은 대상 범위가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안전 등까지 매우 넓어서 이를 모두 망라하는 CSR 인증 유형은 민간 및 공공기관에 불문하고 전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4. 향후 과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SR의 규범화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더라도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규범화기조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해외거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 수출기업들의 CSR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는 인증에 관련된 사항에 집중되어 있다. 특별히 CSR에 대한 분야별 대응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은 CSR 인증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CSR 관련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설되는 CSR 인증제도는 해외의 다양한 인증제도와 호환가능하며, KoBEX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CSR 관련 기존 제도를 활용·연계할 수 있도록 CSR 플랫폼을 구축·개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증에 대한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CSR은 자본·노동·기술 거래의 저변에 존재하는 국가별·지역별 우호관계 수립에도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CSR국제 규범화 기조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규모별로 인증 부담을 차별화하도록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은경 입법조사관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은 국회의원의 의회외교 활동 동향 및 비전에 대해 주간으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